



Briefings of IMO Meeting

NCSR 3 (29 Feb. ~ 4 March 2016)

No. IMO-0004-2016

BRIEFING STATUS

☒ *Flash*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Subject: Newsflash of NCSR 3

제 3차 항해통신·수색구조전문위원회(이하 "NCSR")가 2016년 2월 29일에서 3월 4일까지 IMO 본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CSR 3차 주요 논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도 향후 MSC에서 채택되어야 법적으로 발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무선항행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갈릴레오 승인 (의제 5)

○ Relevant Provisions

- ▶ Res.A.1046(27) : WORLDWIDE RADIONAVIGATION SYSTEM
- ▶ SOLAS Chapter V Reg. 19.2.1.6 :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and systems

○ 글로벌무선항행시스템(WWRNS, World-Wide Radio Navigat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로서 EU의 갈릴레오 승인 건에 대해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ICS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고,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됨

* 현재 위성항법시스템(GNSS)에는 GPS(미국, 1989), GLONASS(러시아, 1989), BEIDOU(중국, '14.11) 등 3 개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MSC 96 에 갈릴레오를 글로벌무선항행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인정해 줄 것을 승인 요청하기로 결정함

* 절차 : 총회 결의서(A.1046(27))에 따라 NCSR 검토 → MSC 승인·공표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Implications

- ✓ **Shipowners**: 기존의 GPS 및 GLONASS, BEIDOU 에 추가하여 GNSS 의 하나로써 갈릴레오 위치신호를 사용하는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서비스의 성능 고려)
- ✓ **Shipbuilders**: 신조 계약 시 선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해당신호를 사용하는 장비탑재 가능
- ✓ **Manufacturers**: 해당위치신호를 사용하는 위치표시장치 제조 및 판매가능

2. 선교설계 및 정보전시의 조화관련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 개정을 위한 신규 모듈* 준비 (의제 6)

○ Relevant Provisions

▶ Res.MSC.252(83) : ADOPTION OF THE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FOR INTEGRATED NAVIGATION SYSTEMS (INS)

* 기존 정보의 통합, 운영요건, 경보관리 및 문서요건 등 4 개 모듈에 추가한 통신설비와 INS 간 연계모듈

○ 아국, 덴마크, 독일은 작업반(WG1)에서 상세 논의를 제안하였으나, 파나마, 영국 및 스페인은 작업반에서 논의하기에는 문서 및 정보가 부족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차기회의에서 상세논의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작업반(중국, 노르웨이 주관)을 구성하고, 관심 국가 및 단체의 참여를 권고함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3. 장거리위치추적(LRIT) 시스템 업데이트 (의제 7)

- LRIT 데이터 이용료 절감을 위한 브라질의 위치보고 주기변경기능 개선 제안에 대하여 작업반의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하고, 차기 회의시 논의 예정
- 국제해사위성기구(IMSO)의 국제데이터교환장치(IDE) 감사 폐지와 관련한 의제는 기술적 논의보다는 정책적 결정 사안이므로 MSC 96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 LRIT 기술사양 변경에 따른 성능평가 시험기준은 운영관리협의체(IMO, IMSO, EMSA)에서 제안한 프로세스, 일정 및 시험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 * 사전테스트('16. 6~7 월), 데이터 센터 테스트('16 11~12 월), 실제 적용('17. 1~2)

4. 통신장비를 통해 수신된 항해정보의 조화로운 디스플레이를 위한 지침개발 (의제 9)

- 국제수로기구(IHO)는 차세대 전자해도(S-100) 표준에 근거하여 공통해사데이터구조*(CMDS)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IMO 와 IHO 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

* 수로, 교통상황, 선박고유정보가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모델링을 통한 표출

- 노르웨이는 해사안전정보(MSI)의 조화된 표출을 위해 8 가지 고려요소*를 고려하여 한다고 제안함

* 표준화된 기호, 글 양식, 정보 선별과 필터링, 브릿지 경계경보 기능 등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논의결과 전문위원회는 2017 년 완료 목표로 노르웨이로 하여금 관심 국가 및 기구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토록 요청함

5. 선박 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Res.MSC.43(64)) 개정 (의제 10)

○ Relevant Provisions

- ▶ Res.MSC.43(64) : Guidelines and criteria for ship reporting systems

- 노르웨이는 자동화된 선박보고를 위한 시범사업계획('16 년, 바렌츠해)을 소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지침개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중국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활용한 선박보고 등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스웨덴, 덴마크, 국제선주협회(ICS) 등으로부터 취지는 공감하나, 지침개정안을 논의하기에는 시점이 이르다는 지적을 받음

- 아국은 자동화, 조화 및 통신보안 등 지침개정방향을 제시하였고,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ICS 는 아국의제문서에 대해 원칙적 지지를 표명함

- 논의결과 전문위원회는 본 의제의 종료시점인 차기 회의에 금번 회기에서 제안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비롯한 다양한 문서들을 회원국에 제출 요청함

6.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 서비스 제공 위성으로서 미국 이리듐 위성의 인정 (의제 11)

○ Relevant Provisions

- ▶ Res.A.1001(35) : Criteria for the provision of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s in the GMDSS (GMDSS 이동위성통신의 설비기준)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미국의 미비사항 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의 요청에 대해 다수국가의 동의로 원안대로 MSC 96 에 채택 승인 요청함

- 1 단계 : 육상설비와 호환성 문제 등 미완료 사항(NCSR 3/11/1 ANNEX)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리돔 위성을 GMDSS 위성 사업자에 포함

- 2 단계 : 미결사항이 해결 즉시 GMDSS 위성 사업자로 최종 인정

○ 중국 및 덴마크는 육상설비와의 호환성 및 위성의 주파수 간섭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특별한 수정 없이 최종 보고서가 작성됨

◆ Implications

- ✓ **Shipowners** : 이리돔 위성은 기존의 Inmarsat 위성이 커버하지 못하는 A4 항해구역(극지방)까지 통신이 가능함을 주목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리돔 위성을 GMDSS 서비스로 선택할 수 있음
- ✓ **Shipbuilders** : 신조 계약 시 장비탑재 가능
- ✓ **Manufacturers** : N/A

7. NAVTEX 와 위성 SafetyNET 수신기, 통합항해표시시스템(INS)의 상호연결 (의제 13)

○ 미국은 NAVTEX(Navigational Telex)와 Inmarsat-C EGC SafetyNET 정보와 통합항해표시장치(INS) 연계를 위한 결의서 초안을 제출함

○ 현재 INS 의 성능기준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의장은 본 의제의 종료시점을 연장('16 년 → '17 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논의결과 전문위원회는 MSC 96 에 종료시점 연장을 승인 요청하고, INS 성능기준 개정을 위해 IMO/ITU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하고 차기회의에 제출토록 함

8. GMDSS 현대화 통신작업반 결과에 대한 논의 (의제 14)

- GMDSS 현대화 작업에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NBDP) 의무탑재 규정 삭제 등 세부 검토*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차기회의에서 이행계획 수립을 논의토록 함

* 기본검토('13 ~ '14), 세부검토('15 ~ '16), 이행검토('17 ~ '18), 관련 장비의 성능기준 등 다수의 규정 검토('19 ~ '20), SOLAS 개정('21 ~ '22), 발효('24)

- NAVDAT 은 기존의 NAVTEX 보다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픽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향후 NAVTEX 대신에 NAVDAT 도 사용할 수 있도록 GMDSS 현대화 작업에 포함하되, NAVDAT 또는 NAVTEX 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로 함

9. IMO 안전, 보안의 규정, 환경에 관한 협약의 통일해석 (의제 25)

[Application of the COLREGs with respect to the placement of side lights]

○ Relevant Provisions

- ▶ COLREG ANNEX I / 10 : Vertical sectors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상 현등(Side lights)에 대한 수직사광범위(수평상하 5 도의 광도유지)에 관하여 동 규칙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해석(성능기준)이 제시됨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다수의 국가의 지지로 차기 회의에 본 제안을 토대로 국제선급협회(IACS)가 주관하여 통일해석안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함

[Interpretation of COLREG 1972 rule 18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able Ships]

o Relevant Provisions

- ▶ COLREG Rule 18 : Responsibilities between Vessels(선박상호간의 책임한계)

o 해저케이블을 매설하거나 케이블 수리를 위한 부이를 설치하는 작업에 임하고 있는 케이블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피항거리 및 연안국의 조치 등)을 제시한 통일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논의결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야간항해시의 조치, 어업활동과의 마찰 등)이 식별되어 MSC 96 에서 동 사항을 추가 고려하여 최종승인 될 수 있도록 요청함

◆ Implications

- ✓ **Shipowners(Operators)** : MSC 96 의 결정사항에 주목하고 작업중인 케이블선 및 수리부이에 대한 피항조치에 관하여 각 선박에 관련 지침제공(SMS 매뉴얼상 등재 등)
- ✓ **Shipbuilders** : N/A
- ✓ **Manufacturers** : N/A

[Pilot transfer arrangements (SOLAS regulation V/23.3.3)]

o Relevant Provisions

- ▶ MSC.1/Circ.1495 : UNIFIED INTERPRETATION OF SOLAS REGULATION V/23.3.3
- ▶ SOLAS Ch.5 Reg.23.3.3 : Pilot transfer arrangements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For sub-committee only 1 step as Flash)

○ 도선사용 승강장치에 관한 규정중 도선사의 승정길이에 따른 추가설비(현측 사다리)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해석이 제시되었으며, 다수의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음

- 단일 승정사다리를 통한 도선사의 승선은 추가설비에 관계없이 9m 를 넘지 않도록 하는 아래 내용의 통일해석이 가결되어 MSC 96 에 승인 요청함

"1 SOLAS regulation V/23.3.3.1 prescribes an operational instruction that limits the climb to not more than 9 m on a single ladder regardless of the trim or list of the ship. ~~If only a pilot ladder is to be used, the maximum height of 9 m from the "safe and convenient access to, and egress from, the ship" to the surface of the water is to include consideration of an adverse list of 15°.~~"

◆ Implications

- ✓ **Shipowners(Operators)** : 단일 승정사다리로 9m 이상 도선사가 승선할 수 없도록 각 선박에 지침제공(SMS 매뉴얼상 등재 등)
- ✓ **Shipbuilders** : 신조 시 선주와 상기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 후 관련설비 설치
- ✓ **Manufacturers** : N/A

P.I.C:

Kweon Young-suk / Deputy Senior surveyor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31

Fax: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General Manager of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